1. 기술규제명 : 「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」

○ 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

○ 개정내용

- 전자파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으로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

○ 규제구분 : 기술규정

① **기술규정의 경우** (WTO TBT 협정문 제2.9조)

점검 내용	해당여부 점검	비 고
Ⓐ 기술규정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,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	해당없음	국제표준과 일치
Ⓑ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	해당	동 개정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역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
⇒ Ⓐ와 Ⓑ에 모두 해당 시 통보		